

2016. 6. 7 개정

「YES증권거래점프예금 특약」(구 외환은행)

제1조 약관의 적용

YES증권거래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이하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 종류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거주자로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합니다.

제4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6조 금리 및 이자계산방법

- ① 이 예금은 은행에서 정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② 제①항의 금리를 바꾼 때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금리를 적용하며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최초 예금일로부터 제①항의 금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 입금의 제한

거래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가계수표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예금의 구성

이 예금을 기본계좌로 하고 은행이 미리 정한 증권•선물•옵션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제휴사”라 한다)중에서 거래처가 지정한 제휴사와 증권•선물•옵션거래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 를 연결하여 운용합니다.

제9조 연결계좌와의 연결

연결계좌는 이 예금의 신규와 동시에 이 예금과 거래가 연결되며 증권계좌의 명의인은 이 예금의 명의인과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제10조 연결계좌의 실명확인

거래처는 은행이 제휴사를 대행하여 연결계좌 개설에 따른 실명확인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1조 매수대금 등의 지급

제휴사로부터 매수대금, 청약대금, 주식배당 관련 세금, 선물·옵션거래자금 등의 이체요청이 있는 경우, 이 예금에서 해당금액을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제휴사가 지정한 제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12조 인출자금 부족 때의 처리

- ① 이 예금의 인출가능자금이 제11조의 이체요청금액에 미달하면 인출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 ② 부족자금이 예금으로 입금되면 제휴사의 별도 이체요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3조 예금의 지급정지

거래처가 제휴사에 연결계좌와 관련하여 매수거래를 위탁할 경우, 은행은 제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휴사가 정한 금액을 결제시점까지 지급정지 합니다.

제14조 출금의 제한

거래처는 연결계좌에 전산상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출금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계좌유지수수료

- ① 이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이 은행이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이 예금의 이자원가일에 은행이 정한 계좌유지수수료 해당금액을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에서 출금합니다.
- ② 제①항의 평균잔액은 이 예금의 이자결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로부터 과거 3개월간 매일매일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이 예금의 잔액이 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잔액 범위내에서 우선 받고 부족자금은 다음 이자원가일에 받습니다.
- ④ 제①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 두거나 게시합니다.
- ⑤ 제①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제16조 해지

- ① 이 예금의 해지시에는 연결계좌도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거래처의 이 예금에 대한 해지요청시 연결계좌에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등 연결계좌가 해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될 때 거래처의 별도요청에 따라 이 예금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등

이 예금은 양도 하거나 명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정보 등의 제공

거래처는 은행이 거래처가 지정한 제휴사에게 이 예금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한 거래처의 정보 및 이 예금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19조 과실책임

- ① 전산조작 착오로 이 예금의 전산상의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과대 계상된 경우 거래처는 과대 계상된 금액을 이 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거래처가 과대 계상된 잔액에 근거하여 연결계좌의 거래주문을 함으로써 제11조의 위탁증거금이 실제잔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은행의 요청으로 제휴사는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매수한 예탁자산을 반대 매매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실과 이익은 은행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20조 면책

- ① 이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거래처의 요청, 기타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 예금의 입금 및 지급정지시에는 연결계좌에 대한 입금 및 지급도 정지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② 천재지변, 전시, 전산상의 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연결계좌와 관련된 거래가 지연 되거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